



윤리경영 지침

Code of Ethics & Ethical Management Guidelines

문서번호	MIRA-ETH-001
주관부서	전략기획·경영지원·안전보건 담당
제정일	2026. 6. 13.
시행일	2026. 6. 13.
승인	대표이사 최요셉 (서명/인)

주식회사 미라스페이스 (MIRA SPACE Inc.)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4길 21, 3층
support@miraspace.ai | 02-569-2501

Public Release

Disclosure to third parties of this document or any part thereof, or the use of any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explicitly authorized by Mira Space Inc. is strictly prohibited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본 문서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Mira Space Inc.에서 명시적으로 허가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2026, MIRA SPACE Inc. All rights reserved.

제정·개정 이력

구분	일자	주요 내용	작성/검토/승인
제정	2026. 6. 13.	최초 제정	작성: 박현우 / 검토: 김재형 / 승인: 최요셉
개정	-	-	-

※ 본 문서는 대표이사 승인 및 사내 공지 후 정식 시행하며, 시행일과 담당부서는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확정한다.

문서의 목적과 적용대상

본 지침은 미라스페이스의 인공위성 및 우주기술 시스템 개발·제조·시험·발사 준비·운용, 지상국 및 통신, 위성 데이터 서비스, 교육·훈련, 연구개발, 영업 및 투자활동 전반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한다.

- 적용대상: 임원, 정규·계약직 임직원, 인턴, 파견·임시근로자 및 회사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확장 적용: 협력사, 공급사, 연구기관, 교육강사, 대리점 등 계약상 준수 의무에 동의한 이해관계자
- 핵심 원칙: 준법, 안전, 정직, 공정, 기술보안, 데이터 책임, 인권, 환경 및 우주의 지속가능성

1. 윤리규범

1. 윤리경영 기본원칙

- 임직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한다.
- 회사의 자산, 기술, 정보 및 사업기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공공의 안전을 우선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또는 개인적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인공위성·우주기술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 품질, 주파수, 개인정보, 수출통제, 보안 및 기타 국내외 법규를 준수한다.
- 임직원의 존엄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차별·괴롭힘·성희롱·부당한 지시가 없는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시험결과, 품질기록, 재무정보, 영업성과 및 연구개발 데이터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조작·은폐하지 않는다.
- 지구궤도와 우주환경을 미래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자산으로 인식하고, 우주잔해 저감과 책임 있는 임무운영을 추구한다.

2. 고객·교육대상자에 대한 윤리

- 고객과 교육대상자에게 제품·서비스·교육과정의 성능, 한계, 위험 및 비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 위성, 시스템 및 교육용 키트는 정해진 품질기준과 안전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결함이나 위험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알리고 조치한다.
- 업무 중 취득한 고객, 학생, 기관 및 파트너의 개인정보·기술정보·임무정보를 보호한다.
- 미성년자와 교육 참가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차별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3. 주주·투자자에 대한 윤리

- 지속가능한 기술혁신과 책임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재무, 기술개발, 발사일정, 계약, 위험요인 등 중요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적시에 제공한다.

3.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제안과 결정을 존중한다.

4. 협력사·거래처에 대한 윤리

1. 협력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가격, 품질, 기술력, 납기, 안전, 보안, 인권 및 환경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사를 선정한다.
3. 협력사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5. 국가·사회·환경 및 우주에 대한 윤리

1. 관련 국가와 지역의 법률, 국제규범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건전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2. 환경, 보건, 산업안전, 인권과 노동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환경영향을 줄인다.
3. 우주교육 기회 확대, 미래인재 양성 및 국제적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4. 위성 운용 시 충돌위험과 우주잔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임무 종료 후 책임 있는 처분계획을 수립한다.

6. 적용 및 신고

1. 본 윤리규범은 미라스페이스의 모든 임직원과 회사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2. 누구든지 위반 또는 위반 우려를 인지한 경우 대표이사, 윤리·준법 담당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신고채널에 신고할 수 있다.
3. 회사는 선의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위반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규와 계약에 따라 조치한다.

부칙

1. 본 윤리규범은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 관련 법령, 사업범위 또는 조직체계가 변경된 경우 본 규범을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다.

II. 윤리경영 세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경영 세부지침은 주식회사 미라스페이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 공급사, 연구기관, 교육강사, 대리점, 임시근로자 등이 반부패·윤리경영 실천 서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조항에 동의한 경우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해외사업은 현지 법령을 우선 준수하되, 현지 기준이 본 지침보다 완화된 경우에도 본 지침의 기본원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해관계자”란 고객, 학생 및 보호자, 주주·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회사의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기술정보”란 설계도면, 소스코드, 펌웨어, 회로, 기구설계, 시험데이터, 키·인증정보, 운용절차, 주파수 및 링크 정보, 발사·궤도·임무정보 등 회사의 경쟁력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위성데이터”란 위성으로 취득하거나 처리한 영상, 텔레메트리, 통신, 위치, 분석결과 및 파생정보 등을 말한다.

제2장 건전한 기업문화와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 ①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지키며 상호 존중한다.
- ② 성희롱,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위협, 따돌림, 보복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다.
- ③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제5조(차별금지와 공정한 평가)

- ① 회사는 인종, 국적,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장애, 출신지역, 가족형태,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채용, 배치, 교육, 평가, 보상 및 승진에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의 역량, 역할, 성과 및 회사 기여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6조(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 ① 임직원은 업무상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리베이트 또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범위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공정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거절하고,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즉시 직속책임자 또는 윤리·준법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③ 횡령, 배임, 내부자거래, 허위비용 청구, 회사기회 유용 및 기타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7조(이해상충 방지)

- ① 임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지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회사의 의사결정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공개하고 해당 의사결정에서 회피한다.
- ② 경쟁사, 협력사 또는 고객과의 겸직·투자·거래가 업무의 공정성이나 기술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업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제8조(부정청탁 금지)

- ① 채용, 평가, 구매, 계약, 연구과제 선정, 교육생 선발, 시험성적, 인증 및 정부지원사업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청탁하지 않는다.
- ②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 고객, 협력사 또는 임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9조(회사자산의 보호와 정당한 사용)

- ① 회사의 자금, 장비, 부품, 시험시설, 소프트웨어, 계정, 데이터, 상표 및 업무시간을 승인된 업무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② 위성부품, 통신장비, 시험장비 및 교육기자재의 반출·대여·폐기는 승인절차와 자산기록에 따라 수행한다.
- ③ 회사 자산의 분실, 손상, 오사용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한다.

제10조(기록과 회계의 투명성)

- ① 계약, 구매, 재고, 시험, 품질, 연구개발, 교육운영, 비용 및 매출 관련 기록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한다.
- ② 허위계약, 이중장부, 증빙조작, 실적부풀리기, 시험결과 은폐 및 비용의 부당한 전용을 금지한다.
- ③ 법령과 내부 보존기준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며, 감사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조하지 않는다.

제3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제11조(고객가치와 정확한 정보제공)

- 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품·서비스의 성능, 사용조건, 한계, 위험 및 납기를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 ② 개발 중인 기술, 예상 성능, 발사일정, 궤도운용 가능성 등을 확정된 사실처럼 과장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
- ③ 고객의 의견과 불만을 경청하고, 결함이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원인과 조치계획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한다.

제12조(고객 및 교육대상자 정보 보호)

- ① 고객, 교육생, 보호자 및 파트너의 개인정보와 비밀정보를 적법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한다.
- ②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③ 개인정보와 고객정보에 대해 접근권한, 암호화, 보관기간, 파기 및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운영한다.

제13조(교육대상자 보호와 교육윤리)

- ① 교육내용은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기반하여 구성하고, 안전상 위험과 장비의 사용한계를 명확히 안내한다.
- ② 미성년자 대상 교육은 보호자 동의, 안전관리, 촬영·개인정보 보호 및 비상대응 절차를 갖춘다.
- ③ 교육성과, 자격, 수수료와 또는 취업·진학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는다.
- ④ 교육기회 제공과 평가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표절·대리수행·시험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4조(주주와 투자자의 권리 보호)

- ① 회사는 혁신과 책임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고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 ② 투자유치와 IR 과정에서 재무상태, 기술성숙도, 계약상태, 규제, 발사위험 및 사업전망을 허위·과장하지 않는다.
- ③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보제공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다.

제15조(공정한 협력사 선정과 거래)

- ① 협력사는 품질, 기술, 가격, 납기, 안전, 보안, 인권, 환경 및 사업수행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지연하지 않는다.
- ③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경쟁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6조(협력사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 ① 협력사의 도면, 견적, 공정, 소스코드, 노하우 등 비밀정보를 계약과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 ② 거래목적 외를 벗어난 기술자료 요구, 무단복제, 역설계, 제3자 제공 및 부당한 사용을 금지한다.

제17조(정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관계)

- ① 정부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조달, 인증, 허가 및 보고 과정에서 사실과 증빙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 ② 보조금, 연구비 및 지원금은 승인된 목적과 예산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 ③ 산학연 협력에서는 연구성과, 지식재산권, 보안등급, 데이터 소유권 및 발표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한다.

제18조(공정한 홍보와 대외소통)

- ① 광고, 보도자료, SNS, 제안서, 전시 및 발표자료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② 고객, 파트너, 정부기관, 경쟁사 또는 임직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공식 입장은 권한이 부여된 자가 발표하며, 비공개 임무정보와 기술정보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우주기술·위성사업 특화 윤리

제19조(임무안전과 품질 최우선)

- ① 인명, 발사체, 위성, 지상설비 및 제3자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은 일정·비용·성과보다 우선하여 관리한다.
- ② 설계검토, 부품검사, 조립, 시험, 운송, 발사장 작업, 운용 및 폐기 단계별로 승인된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준수한다.
- ③ 중대한 결함, 시험실패, 비정상 상태 또는 안전상 우려를 발견한 임직원은 작업중지와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④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기능을 고객 또는 임무에 투입하지 않는다.

제20조(시험·연구데이터의 진실성)

- ① 환경시험, 진동·충격·열진공·EMC, 통신시험, 소프트웨어 검증, 비행시험 및 운용기록을 실제 결과대로 작성한다.
- ② 불리한 결과, 오차, 이상치 또는 실패사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합격기준을 사후 변경하지 않는다.
- ③ 시험조건, 계측기 교정상태, 소프트웨어 버전, 샘플 구성 및 판단근거를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 ④ 논문, 특허, 보고서 및 기술자료 작성 시 표절, 데이터 조작, 중복게재 및 부당한 저자표시를 금지한다.

제21조(기술보안과 사이버보안)

- ① 기술정보와 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최소권한 원칙으로 접근을 통제한다.
- ② 소스코드, 인증키, 암호키, 주파수 설정, 지상국 접속정보, 위성 명령체계 및 고객 임무정보를 승인되지 않은 저장소·개인계정·외부기기에 보관하지 않는다.
- ③ 위성, 지상국, 서버, 교육장비 및 업무용 단말에 대해 계정관리, 다중인증, 취약점 대응, 백업, 로그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 ④ 보안취약점이나 침해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사실확인 및 피해확산 방지에 협조한다.

제22조(법규·허가·수출통제 준수)

- ① 위성 제작·운용, 발사, 무선국, 주파수, 전파인증, 개인정보, 국가연구개발, 전략기술·전략물자 및 수출입에 관한 법령과 허가조건을 준수한다.
- ② 해외 고객, 파트너,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및 기술이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후 거래한다.
- ③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품목 분류, 우회수출, 문서조작, 최종사용자 은폐 및 무허가 기술제공을 금지한다.

제23조(주파수와 통신의 책임 있는 사용)

- ① 위성·지상국·교육용 무선장비는 허가 또는 적법한 이용조건과 출력, 대역폭, 점유시간 및 지역 제한을 준수한다.
- ② 다른 우주·항공·통신 시스템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파수 조정, 시험계획 및 비상중지 절차를 마련한다.
- ③ 승인되지 않은 주파수 사용, 불법감청, 통신방해 또는 무단 송신을 금지한다.

제24조(우주환경과 궤도 지속가능성)

- ① 임무기획 단계에서 충돌위험, 우주잔해, 임무종료, 재진입 및 고장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 ② 분리부품과 파편 발생을 최소화하고, 배터리·압력용기·추진계 등 잔존에너지의 안전한 처리와 패시베이션을 고려한다.
- ③ 가능한 범위에서 궤도결정, 충돌회피, 운용상태 공유 및 임무종료 후 감속·폐기 계획을 수립한다.
- ④ 단기 성과를 위해 우주환경에 불필요한 위험이나 지속적인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제25조(위성데이터의 책임 있는 취득과 활용)

- ① 위성영상과 위치·통신 데이터는 계약, 법령, 안보, 개인정보 및 제3자 권리를 고려하여 취득·처리·판매·공유한다.
- ② 개인 또는 특정 시설을 부당하게 감시하거나 차별, 불법행위, 인권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요청은 검토·제한하거나 거절한다.
- ③ 데이터의 해상도, 촬영시점, 정확도, 처리수준, 오차 및 분석한계를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한다.
- ④ 원본과 처리본의 이력, 접근권한, 라이선스 및 보존·파기 기준을 관리한다.

제26조(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책임성)

- ① 위성데이터 분석, 객체탐지, 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학습데이터, 성능, 오류 가능성과 적용한계를 검증한다.
- ② 안전, 재난, 안보 또는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과는 사람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된 결과를 절대적 사실로 표시하지 않는다.
- ③ 편향, 데이터오염, 모델보안 및 허위결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제27조(교육·시험·현장활동의 안전)

- ① 납땜, 배터리, RF, 고전류, 압력, 회전체, 발사체, 드론, 풍선, 로켓 및 야외회수 등 위험요소별 안전수칙과 보호장비를 마련한다.
- ②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자격과 권한을 갖춘 책임자의 감독하에 수행하며, 비상연락·응급조치·대피계획을 운영한다.
- ③ 교육성과나 시연을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발사·송신·비행을 수행하지 않는다.

제5장 ESG·인권·사회적 책임**제28조(환경·보건·안전)**

- ① 회사는 환경,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② 화학물질, 배터리, 전자폐기물, 복합재료, 금속가공 부산물 및 포장재를 안전하고 적법하게 관리한다.
- ③ 에너지, 자원, 폐기물 및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계·구매·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제29조(인권과 노동기준)

- ① 강제노동, 아동노동, 임금체불, 위험한 노동 및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② 근로시간, 휴게, 임금, 안전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한다.
- ③ 협력사에도 기본적인 인권·노동·안전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재검토한다.

제30조(책임 있는 공급망)

- ① 핵심부품과 소재의 원산지, 정품 여부, 품질, 추적성, 보안 및 공급중단 위험을 확인한다.
- ② 위조부품, 도난품, 불법복제품, 규제물질 및 출처가 불분명한 부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③ 공급망의 안전·환경·인권·윤리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활동을 추진한다.

제31조(사회공헌과 미래인재 양성)

- ① 회사는 우주기술 교육과 실제 프로젝트 경험의 접근성을 높여 미래 우주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 ② 취약계층, 국제보훈 대상자와 후손, 청소년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장학·기술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투명하게 추진한다.
- ③ 사회공헌을 홍보수단으로만 이용하거나 수혜자의 개인정보와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6장 위반신고·조사·보호

제32조(윤리위반 신고의무)

- ① 임직원은 본 지침, 법령, 안전절차 또는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한다.
- ② 신고대상에는 부패, 회계부정, 기술유출, 데이터조작, 안전은폐, 인권침해, 불법송신, 규제위반 및 보복행위 등이 포함된다.

제33조(신고채널과 비밀보장)

- ① 신고는 대표이사, 윤리·준법 담당자 또는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이메일·문서·상담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 ②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유하며, 관련 기록은 안전하게 관리한다.
- ③ 익명신고도 가능하나 사실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제34조(신고자 보호와 보복금지)

- ① 선의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해고, 감봉, 전보, 평가상 불이익, 위협, 따돌림 및 계약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 보복행위는 독립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
- ③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한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5조(조사와 시정조치)

- ① 회사는 신고 또는 인지한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 ② 조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이해상충이 있는 자는 조사와 의사결정에서 배제한다.
- ③ 위반이 확인되면 사규와 계약에 따라 징계, 계약조정·해지, 손해회복, 재발방지, 교육 및 관계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④ 회사의 손실이나 중대한 위험을 예방한 신고자에게 합리적인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점검·교육·개정

제36조(윤리경영 점검)

- ① 회사는 연 1회 이상 윤리·준법, 안전, 정보보안, 개인정보, 공급망 및 ESG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점검결과 취약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책임자와 완료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관리한다.
- ③ 중대한 사업변경, 발사·운용 개시, 해외진출, 규제변경 또는 사고 발생 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윤리경영 교육)

- ①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윤리·준법 교육을 이수한다.
- ② 직무에 따라 반부패, 개인정보, 기술보안, 수출통제, 연구윤리, 위성운용 안전, 주파수 및 교육안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 ③ 신입 임직원과 주요 협력사는 업무개시 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교육과 서약을 완료한다.

제38조(해석과 자문)

- ① 본 지침의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직속책임자 또는 윤리·준법 담당자에게 자문한다.
- ② 안전, 수출통제, 국가보안, 개인정보 및 법률상 중대한 사안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는다.

제39조(개정과 시행)

- ① 본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제정·개정한다.
- ② 법령, 국제규범, 산업표준, 회사의 사업 및 조직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다.
- ③ 본 지침은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반부패·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본인은 주식회사 미라스페이스의 임직원 또는 업무수행 관계자로서 회사의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업무와 관련된 법령, 안전절차, 품질기준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2. 부정한 금품·향응·청탁을 주고받지 않고 이해상충을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 3. 회사와 고객의 자산, 기술, 개인정보, 위성데이터 및 비밀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 4. 시험·연구·재무·영업 관련 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겠습니다.
- 5. 위성 임무의 안전,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데이터의 책임 있는 사용을 우선하겠습니다.
- 6.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및 보복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7. 위반 또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사규,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서약일	2026년 월 일
소속/기관	
성명	
서명	

문서관리 안내

본 문서의 담당부서, 신고채널, 시행일 및 승인정보는 정식 시행 전 회사의 내부 결정에 따라 확정하여 기재한다.
법률·규제 적용이 중요한 사안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운영한다.